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84

2020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문화체육관

광위원회(2020년 9월 3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유연식)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15. 12. 15.)
-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1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자 함

나. 주요내용

- (1). 사 업 명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 (2). 위 치: 성북구 길음동 1286-8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 (3). 규 모 : 지상 1~3층(연면적 2,998.6m², 전용 1,855.7m²)
- (4). 사업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방송통신위원회 출연기관) 서울센터
- (5). 주요시설: 디지털교육실, 장애인방송제작실, 편집실, 사무실 등
- (6). 주요사업
 - 미디어 교육 지원 :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교육 등
 -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
 -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
- (7). 출연금액 : 286,689천원
 - 인건비 148,442천원, 임차료 76,831천원, 운영비 61,416천원
- (8).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센터 우영비 지원 필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 제5조(운영비 분담)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분담한다.
-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방송법」제90조의2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⑦ 국가 및 <u>지방자치단체는</u>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 예산조치 : 2021 회계연도 예산편성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회계연 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
- 서울시는 2015년 12월 15일 서울시민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 (Public Access)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성북 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회계연도까지는 보조금으로 센터 운영비를 지급하였으나,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기존 보조금 교부 방식을 「방송법」제 90조의2제7항 및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

약, 제5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2017회계연도부터 의회 동의를 언어 출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운영비의 20%를 분담하 고 있음.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 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제5조(유영비 분담)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 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분담한다.

- 1. (생략)
-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현재 성북구 보문로 171 노블레스빌딩 의 지상 2~3층을 임차하여 사용 중(임차면적 521.4m²)이며, 임 대료는 임차계약 당사자인 성북구에서 부과(연간 931만원)하였 으나. 2020년 9월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의 완공에 따라 동 시설 1~3층(면적 2.998.64m²)을 사용하게 되면서 서울시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동 사무를 위한 임차료가 신규 편성(2021년 예 산안 7천6백만원)되었음.
- 제출된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비는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인력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시설 및 장비 유지비. 관리용역비 등 전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커져 총 14억 5천2백만원이 될 예정이며, 이 중 협약에 따 른 서울시의 출연금(20%)은 2억 8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에사(아) 초관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							
ユ	분	2020년		2021예산(안)	증감 (B-A)	증감률(%)	
-		본예산	최종예산 (A)	(B)	亏行 (D-A)	(B-A)*100/A	
계		(X-)	(X-)	(X-)	(X-)	(X-)	
		159,388	159,388	286,689	127,301	79.8	
출연금		(X-)	(X-)	(X-)	(X-)	(X-)	
		159,388	159,388	286,689	127,301	79.8	

다만, 임차면적(521.4㎡→2,998.64㎡)이 늘어났으나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감액(55,200천원→16,420천원)되고, 인원이 증원(5명→12명)되었으나 '특근매식비'는 감액(3,888천원→1,080천원)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커졌으나 이에 따른 운영비가 오히려 감액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못하고 있음.

□ 2021년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 2021년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159,388,000원 = 159,388천원	□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286,689,000원 = 286,689천원					
	○ 인건비 ((58,612천원×5명×1년)+(54,500천원×8명 ×0.5년))×20% = 102,212천원	○ 인건비 ((60,230천원×12명×1년)+(38,900천원×1 명×0.5년))×20% = 148,442천원					
	○ 일반수용비(소식지 및 안내 홍보물 제작, 행사비 등 20%) 3,000,000 = 3,000천원	○ 일반수용비(소식지 및 안내 홍보물 제작 등 20%) 13,586,000 = 13,586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관리비, 인터넷 전용선, 보험료, 우편요금 등) 55,200,000	○ 공공요금 및 제세(관리비, 인터넷 전용선, 보험료, 우편요금 등) 16,420,000					
	= 55,200천원 ○ 특근매식비 = 3,888천원	= 16,420천원 ○ 특근매식비 = 1,080천원					
	○ 시설 및 장비 유지비 = 1,640천원	○ 시설 및 장비 유지비 = 2,000천원					
출연금	○ 유류비(차량 유류비) 50,000*12개월 = 600천원	○ 유류비(차량 유류비) = 200천원					
	○ 관리용역비(방범시스템) = 1,440천원	○ 관리용역비 = 8,400천원					
	○ 직무수행경비(센터장 직책수행경비) = 720천원	○ 직무수행경비(직책수행경비) = 720천원					
	○ 공유재산사용료 공제 -745,000,000*2.5%*1/2 = -9,312천원	○ 임차료 384,158천원*20% = 76,831천원					
		○ 일반용역비(서울인라디오 등 행사비 20%, 정산보고서 검토) = 13,100천원					
		○ 기타운영비 = 600천원					
		○ 국내여비 = 440천원					
		○ 업무추진비 = 810천원					
		○ 복리후생비 = 4,060천원					

○ 한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9 년 7월 18일 제22조의4를 신설하고 출자·출연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출자·출연 사무명
-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6. 이사회 회의록
- 7. 결산 보고서
-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지난해 본 동의안에 따른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았다는 사유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를 근거로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한 차례 상정을 보류하고 지적을 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본부 문화시설과는 2021년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에 대한 부가적인 자료 뿐 아니라 동의안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과 결산 보고서"와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새로 체결했는지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음.

○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에 따르면 출연금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경비로서 보조금과 달리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과 반납절차가 없으며,

센터의 전체 운영비 중 서울시에서 교부한 일부 운영비만 정산함에 따라 전체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확인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한 서울시의회 동의 절차는 서울시 행정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지적을 받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은 사전에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자료를 구비해 두지 않은 담당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결과로 보이므로 주의가 필요함.

○ 동 사업과 더불어 '서울 미디어 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은1) 서울 시의 문화분야 중흥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문화본부에서 맡 는 것보다 미디어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시민소통기획관' 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작년부터 제시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는 여전히 문화본부가 소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이원화된 비효율적인 소관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와 조정은 2021년 예산 편성 전정리가 되어야 할 것임.

¹⁾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지하1층에 공간을 조성하여 미디어 분야 예비 창업 등 스타트업 발굴 및 연계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가결(2019.12.16.)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질의: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3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출연기관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하고, 동법 제22조의4에 따르면 시장은 제22조의3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과 결산 보고 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의안 제출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답변: 주의하겠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784

제출년월일: 2020년 8월 12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15. 12. 15.)
- 나.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1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나. 위 치 : 성북구 길음동 1286-8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다. 규 모 : 지상 1~3층(연면적 2,998.6m², 전용 1,855.7m²)

라. 사업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방송통신위원회 출연기관) 서울센터

마. 주요시설: 디지털교육실, 장애인방송제작실, 편집실, 사무실 등

바. 주요사업

○ 미디어 교육 지원 :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교육 등

○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

○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

- 사. 출연금액: 286.689천원
 - 인건비 148,442천원, 임차료 76,831천원, 운영비 61,416천원
- 아.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센터 운영비 지원 필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 제5조(운영비 분담)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분담한다.
-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방송법」제90조의2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국가 및 <u>지방자치단체는</u>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나. 예산조치 : 2021 회계연도 예산편성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시설과 문화시설2팀 김동준(☎2133-4229)